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서울특별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지역
정보화 활성화를 위해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서비스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
문제의 위험을 수반하며, 민간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 서비스가 좀
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
전자우편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성은 낮아 보입니다.

- 따라서 현행 조례에 포함된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서울 시민의 편익 증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라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9조 전자우편 서비스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- 감사합니다.